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2-19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9누62682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A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19. 10. 8. 선고 2019구합1005 판결
변 론 종 결	2019. 12. 12.
판 결 선 고	2020. 1. 9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8. 5. 15. 원고에 대하여 한 10,880,000원의 취득세 등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2-19

1.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2. 추가하는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은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,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실질과 관계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이라는 형식에 의거하여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다.

나. 판단

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(가)목은 취득세가 감면되는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의 요건 중 하나로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'을 정하고 있고,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'의 의미에 관하여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.

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(가)목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,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.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이 '1가구'의 의미에 관하여 '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'이라고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2-19

은 아니다.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